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정의 및 추진근거,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알뜰교통카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공포, 2023. 2. 16시행)됨에 따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필요 절차,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자료제공 요청시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알뜰교통카드 사업 권한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임과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안 제11조의 8제2항 신설)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11조8의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 규정을 준용토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권한(제11조의10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알뜰교통카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정보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다. 알뜰교통카드 사업계획 수립 등(안 제11조의11 신설)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사업추진계획 수립과 보조사업의 지자체 예산규모, 집행계획 제출 등 필요 절차를 정함

라.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위임 및 위탁(안 제26조의2 개정)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권한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하고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8의 제목 “(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를 “(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의8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법 제10조의12제2항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10 및 제11조의1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10(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해당 사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5호 및 법 제10조의1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의 주민등록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의11(알뜰교통카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10에 따

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성과

2. 당해연도 사업 목표

3.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지사 등은 희망하는 보조금 예산규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모집인원·이용자수, 교통요금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 규모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규모를 통보받은 경우 연간 보조사업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권한으로 한정한다)”를 “권한으로 한정한다) 및 법 제10조의12에 따른 권한”으로 한다.

제26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의12

호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
공단에 위탁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8(<u>통합정보시스템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u>) (생략) <u><신 설></u>	제11조의8(<u>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적·기술적 보호 조치</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법 제10조의12제2항에 따른 <u>알뜰교통카드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u>
<u><신 설></u>	제11조의10(<u>고유식별정보의 처리</u>) <u>국토교통부장관(해당 사무가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2조제5호 및 법 제10조의12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급자의 주민등록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1조의11(<u>알뜰교통카드 사업</u>) ①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 10에 따른 알뜰교통카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u>

항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추진 성과

2. 당해연도 사업 목표

3. 사업의 주요 추진계획

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지원대상자는 본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알뜰교통카드 사업에 참여하는 시·도지사 등은 희망하는 보조금 예산규모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별 모집인원·이용자수, 교통요금지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예산규모를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등은 보조금 규모를 통보받은 경우 연간 보조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의2(<u>권한의 위임</u>) 국토교통 부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권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 호가목 후단에 따른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에 대한 <u>권한 으로 한정한다</u>)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에 위임한다. 1. ~ 7. (생략) <u><신설></u>	제26조의2(<u>위임 및 위탁</u>) ① ---- ----- ----- ----- ----- 권한 <u>으로 한정한다</u>) 및 법 제10조의1 <u>2에 따른 권한</u>----- ----- -----. 1. ~ 7. (현행과 같음) ② <u>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 조의12호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 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다.</u>
---	--